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영 화 및 비 디 오 물 의 진 흥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황 희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영화산업의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18161호, 2021. 5. 18. 공포, 2021. 8. 19. 시행)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,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의 범위 등(안 제4조의4)

영화산업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, 실태조사를 영화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4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법 제3조의10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화산업 사업체의 기초 정보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
2. 영화산업 인력 및 종사자 현황에 관한 사항
3. 영화산업 매출 규모 및 수익성에 관한 사항
4. 영화산업 종사자의 계약 형태, 임금수준 등 고용에 관한 사항
5. 영화산업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
6. 영화산업 내 성희롱·성폭력 현황 등 성평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영화산업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영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이 영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4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</u> <u>법 제3조의10제3항에 따른 실태</u> <u>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</u> <u>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영화산업 사업체의 기초 정</u> <u>보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</u> 2. <u>영화산업 인력 및 종사자 현</u> <u>황에 관한 사항</u> 3. <u>영화산업 매출 규모 및 수익</u> <u>성에 관한 사항</u> 4. <u>영화산업 종사자의 계약 형</u> <u>태, 임금수준 등 고용에 관한</u> <u>사항</u> 5. <u>영화산업 종사자의 사회보험</u> <u>가입 실태 등 근로환경에 관</u> <u>한 사항</u> 6. <u>영화산업 내 성희롱·성폭력</u> <u>현황 등 성평등에 관한 사항</u> 7. <u>그 밖에 영화산업 진흥 또는</u> <u>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</u> <u>을 위해 필요한 사항</u> <u>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</u> <u>조사를 영화산업 관련 전문성과</u> <u>인력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</u> <u>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32